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(방한용·패션용·스포츠용 마스크)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

국가기술표준원(2024. 6. 3.)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(방한용·패션용·스포츠용 마스크)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.

1. 개정 취지

-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식 마스크 제품에 대한 안정적 제품안전관리를 시행하려는 것임.

2. 개정 주요내용

- 전자식 마스크에 적용되는 안전요건,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을 내용으로 안전기준 내 제2부(전자식 마스크) 신설

3. 시행일

- 2024년 7월 2일

* 세부내용

-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(www.kats.go.kr → 고시·공고)에서 확인 가능